

지표관리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0. 12. 22. 개정 2022.03.04.

제1조(목적)

본 지침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지표관리 및 교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표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대학정보공시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
- ②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
- ③ 만족도조사 개선 방안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
- ④ 각 종 평가를 위한 지표관리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지표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2.03.04.>

③ 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획처 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4조(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변경, 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기 만료 전에 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, 교체된 위원은 잔여기간까지 임무를 수행한다.

제5조(회의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.

제6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관계자의 회의참석)

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교 내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12.22.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